

2026년도 무인비행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통합공고

경상북도와 (재)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도내 무인비행체 산업 활성화 및 기술 고도화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2026년도 무인비행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혜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2월 23일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I. 지원내용

1. 지원분야 : 무인비행체*관련 기체, 부품, 운항 관련 소프트웨어 분야 등

* 무인비행체 분야 : 무인항공기, 드론, 항공관제, 항공교통서비스 플랫폼, 관련 SW 등 제조 및 운항, 부품 등에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분야

구분	프로그램	세부내용	지원 규모	지원 금액
기술 개발 및 사업화 (R&D)	▶ 기술(제품) 개발	· 기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단계 또는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	2개사	최대 기업 당 60,000천원 이내
상용화 (비R&D)	▶ 기 개발품의 상용화	· 기존에 개발된 제품(기술)을 바탕으로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지식재산권 확보, 실증, 인증 등 · 개발된 제품(기술)이 TRL7 이상 (별첨참고)	2개사	최대 기업 당 100,000천원 이내
마케팅	▶ R&D, 비R&D 선정기업 대상 선진기술 벤치마킹, 국내외 마케팅을 위한 박람회 참가/바이어 상담 기회 제공			

※ 국산화 기술개발, 중·대형 무인비행체 관련 사업 또는 무인비행체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은 선정평가 시 우대

※ R&D, 비R&D 중복지원 불가

※ 이전 지원 실적이 있는 기업은 동일과제, 동일프로그램 신청이 불가능하며, 다른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가능

(ex) 2025년 R&D지원기업 → R&D지원 불가, 비R&D지원 가능)

※ 사업비는 인건비, 간접비, 연구수당 계상불가, 재료비, 연구활동비에 한정하여 사업비 책정

※ 지원금은 보증보험증권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선지급하고 추후 사업종료 후 정산

※ 마케팅 지원은 R&D, 비R&D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추후 안내

※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기업부담금 : 기업지원금의 10% 이상(현금 매칭)

3. 사업비환수 : 지원목적 외 사용, 지원기업 선정 시 조건 및 사업계획 불이행의 경우 사업비 환수

4. 사업수행기간 : 2026. 04. ~ 2026. 10.(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방향

가. 무인비행체 기체소재 및 내부 부품의 고기능, 경량소재 제작 기술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나. 무인비행체 관련 소프트웨어(관제, 운항, 교통관리, 비행제어 시스템, 자율비행 및 충돌회피 기술, 안티드론 등) 개발 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 기술 역량강화 지원

6. 지원절차

사업공고 (2026년 2월)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www.gbtp.or.kr)
과제 신청.접수 (2월~3월)	기업 → 경북테크노파크
서면/발표평가 (3~4월)	평가위원회 구성 (필요시 현장조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
사업협약체결 (4월)	경북테크노파크 ↔ 중소기업
사업수행 설명회 (5월)	사업 추진 절차, 지원내용 및 사업비 집행·관리 기준 등 안내
사업수행.관리 및 현장실태조사 (7~8월)	경상북도, 경북테크노파크 → 중소기업
최종평가 (11월)	최종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비 정산 (2027년 1~2월)	위탁정산기관(회계법인) 정산
성과활용 및 사후관리	종료 후 성과보고회(정산 후 1개월 이내) 종료 후 3년 사후관리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II. 지원자격

1.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포함)이 경북도 내 소재한 무인비행체 관련 기술개발 및 사업화 희망 중소기업
 - ※ 경북 지역 외 소재기업의 경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기간 내 경북도내 기업 이전 필요 (본사, 공장, 연구소) → 지원신청 시 기업 이전 협약서 제출 및 최종 결과 평가 시 기업이전 확인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 2026년 10월까지 지원사업 완료 가능한 대상 지원
4. 지원 대상 선정 후 현장방문 및 실태조사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진행상황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기간 내 과제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사업계획 기재 내용에 허위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별도 자체심의를 통해 지원 제외 여부 결정
5. 본 공고 내용 외에 사업수행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 안내에 의해 진행
6. 우대사항
 - 가. 무인비행체 산업 기여도가 높은 기업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선정평가 시 우대
 - 국산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중·대형 무인비행체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기업
 - 기존 사업 분야에서 무인비행체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III. 지원제외 대상

1. 본사업 지원 적합성 관련
 - 가. 본 사업과 동일한 기술개발 또는 사업화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관련 사업에서 지원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중복이 확인될 경우
 - 나. 지원분야 및 지원자격이 상이하거나 해당이 없는 경우
 - 다. 접수 마감일 기준, 정부기관 및 지자체로부터 사업 참여 제재 중인 경우
 - 라. 접수 마감일 기준,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마. 제조업이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바. 접수기간 내에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 사.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재무 건전성 관련

- 가.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연속 부채비율 1,000% 이상 시 제외
- 나.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다.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 자세한 사항은 VII.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참고

IV. 평가방법

1. (서면평가)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과제 중복성, 참여제한 여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표평가 대상 과제를 선정함

가. 평가 항목

i) 사업계획 평가

※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 지원의 필요성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15	50
	◦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연구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추진계획 일정의 현실 가능성 및 적정성 ◦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 중·대형 무인비행체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여부	20	
	◦ 사전준비성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 정도	5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신청 지원금의 사용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10	
기술성 및 사업성	◦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 기술 보유 수준 정도 ◦ 관련 기술 특허보유 여부 등	5	40
	◦ 개발 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력	◦ 전략적 육성 필요성 ◦ 개발 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 가능성	10	
	◦ 시장전망	◦ 해당 개발품목의 사업화 가능성 ◦ 해당 개발품목의 시장 전망 ◦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 여부	15	
	◦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	◦ 시장 창출,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10	
지역 기여도	◦ 지역 기여도	◦ 지역 기여도(고용률 및 생산액 등) 및 기여 가능성 ◦ 무인비행체 분야로의 사업 전환 여부	10	10
소 계			100	

ii) 사전제외 대상 확인 (사전지원 제외 대상(공통운영요령 근거)에 의거)

※ 자세한 사항은 VII.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참고

나. 선정 방법: 종합평점 70점 이상을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해당 과제의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선정

2. (발표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기업의 역량, 사업화 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대효과 등에 대해 평가

가. 평가 항목

i) 기술개발 및 사업화(R&D)

※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추진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및 조직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괄책임자의 해당 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실적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기술개발 인력의 확보 정도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추진계획 일정의 현실 가능성 및 적정성 목표달성 계획의 구체성 중·대형 무인비행체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여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3년간 기술개발 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 기술 보유 수준 정도 관련 기술 특허보유 여부 등 	5	
기술성 및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략적 육성 필요성 개발 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 가능성 	2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개발품목의 사업화 가능성 해당 개발품목의 시장 전망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 성공 시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 창출, 기술향상 정도, 고용창출 효과 등 	10	
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적정성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전준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 	10	
지역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기여도(고용률 및 생산액 등) 및 기여가능성 무인비행체 분야로의 사업 전환 여부 	10	10
소 계			100	

ii) 상용화(비R&D)

※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 목표 및 필요성	◦ 목표의 타당성	◦ 사업화 목표의 명확성 및 구체성	10	40
	◦ 기술개발 정도	◦ 기 개발된 제품의 기술개발 수준(TRL7단계 이상) ◦ 국산화 기술개발 추진 여부	20	
	◦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 지원의 필요성	10	
계획의 적정성	◦ 사업화 가능성	◦ 해당 개발품목의 사업화 가능성 및 시장 전망 ◦ 중·대형 무인비행체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여부	15	35
	◦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	◦ 추진계획 일정의 현실 가능성 및 적정성	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 신청 지원금의 사용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10	
활용계획 및 방안 수립	◦ 파급효과	◦ 지원 결과 활용 계획의 적정성	10	25
	◦ 지역 기여도	◦ 사업화 성공 시 기술, 경제, 사회적 기여 가능성 ◦ 지역 기여도(고용률 및 매출액 등) 및 기여 가능성 ◦ 무인비행체 분야로의 사업 전환 여부	15	
소 계			100	

나. 선정 방법: 종합평점 70점 이상을 “지원가능 과제”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해당 과제의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지원 범위 내에서 순위별로 선정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적합한 기업이 없거나 미달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3. (최종결과평가) 수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발표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결과를 판정함

※ 평가등급 : 최우수, 보통, 성실수행, 불성실수행 등

※ 최종평가 위원회 일정은 향후 공지

가.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비 “인정” 또는 “환수”(전액 또는 일부)

나. 최종 결과평가 항목

※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음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추진목표 달성도	◦ 추진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 추진계획의 적정성 ◦ 정량적, 정성적 목표 달성 정도	15	30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 협약 금액 대비 실 지출 금액의 가감 정도 ◦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외주용역, 물품구매 등)	15	
사업 추진의 적정성	◦ 연구개발 성과	◦ 정량적 목표 달성 여부 ◦ 기술 수준과 목표달성 결과의 구체성	15	30
	◦ 기업 성장 역량	◦ 최근 2년간 매출액 성장 정도 ◦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경우 매출발생 여부	15	
성장 가능성	◦ 매출 확대 실적	◦ 매출/수출증가 및 확대가능성 ◦ 주요매출/수출처 현황(다변화 여부) 및 계획	10	30
	◦ 기술확보 및 성장가능성	◦ 생산 및 개발제품의 성장 가능성	10	
	◦ 지역기여도	◦ 지역 기여도(고용률 및 생산액 등) 기여 가능성	10	
자체평가	◦ 자체평가 결과	◦ 사업 진행의 적정성 (계획 대비 진척도) ◦ 모니터링 점검 지적사항 수렴 정도 ◦ 매우 양호(10점), 양호(7점), 보통(5점), 미흡(3점)	10	10
소 계			100	

4. (평가위원회 재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평가보류”로 판단된 과제는 평가 결과 통보 후 3주 이내 수행결과보고서 보완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5. (평가위원 구성) 산·학·연 외부전문가 5명 이내

V.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목록
필수	① (서식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② (서식2)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③ (서식3) 청렴서약서
	④ (서식4) 중복지원 금지사항 협약서
	⑤ (서식5) 개인정보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최근 3년(23~25년) 재무제표 ※ 2025년 재무제표 미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가능 ※ 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⑧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⑨ (서식6) 제출서류 사전 검토표
해당시	⑩ 공장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⑪ 회사소개서, 제품 홍보자료 등
	⑫ 지식재산권, 인증관련 :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ISO등

VI. 신청방법 및 문의처

1. 신청양식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2. 신청기간 : 2026. 2. 23.(월) ~ 2026. 3. 20.(금) 18:00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www.gbtp.or.kr)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기타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4. 문의처
 - 담당자 : 경북테크노파크 지역특성화추진실 이효진 연구원
 - E-mail 및 연락처 : hjlee82@gbtp.or.kr, 054-437-9315

Ⅶ. 참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사전지원 제외 대상(공통운영요령 근거)

- ①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기업의 부도, 자본전액잠식(최근 회계연도 말 기준)
- ③ 국세·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⑤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1,0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1,0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사업개시일이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예외로 한다
 -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⑦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간이과세자 및 대기업은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⑧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신청서 등)가 미비하거나, 신청서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 ⑨ 기타 본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유의사항

- ①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지원금액의 현금 10%이상)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이체내역 등) 제출必
-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평가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 ④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⑤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기술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⑥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 ⑦ 사업비[사업비=지원금] 구성은 보조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을 포함한 금액
 - 사업비는 별도의 사업비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해야함(민간부담금도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
 - 경북TP-수혜기업 양자 협약으로 협약 체결
 -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
 -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지급을 위해 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계상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 → 민간부담금 입금(기업) → 사업비(보조금) 선지급(경북TP→기업)
 - 상용화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종료 후 직·간접 매출성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선정 후 설명회를 통해 안내 예정
- ⑧ 사업비유용,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
- ⑨ [중간점검 현장실태조사]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 ⑩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기업)의 소유로 함
- ⑪ [사후관리] 선정기업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결과로 인한 성과(매출, 수출, 고용 등)를 기관에 보고해야함

[별첨] 산업핵심 전략기술별 TRL 평가지표

구분	단계	정의	세부설명
기초 연구 단계	1	기초 이론/실험	○ 기초이론 정립 단계
	2	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 기술개발 개념 정립 및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 출원 단계
실험 단계	3	실험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 또는 전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본 성능이 검증될 수 있는 단계 ○ 개발하려는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을 확보하는 단계
	4	실험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 시험샘플을 제작하여 핵심성능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단계 ○ 3단계에서 도출된 다양한 결과 중에서 최적의 결과를 선택하려는 단계 ○ 컴퓨터 모사가 가능한 경우 최적화를 완료하는 단계 ○ 의약품 등 바이오 분야의 경우 목표 물질이 도출된 것을 의미
시작품 단계	5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의 실험실 시작품 제작 및 성능평가가 완료된 단계 ○ 개발 대상의 생산을 고려하여 설계하나 실제 제작한 시작품 샘플은 1~수개 미만인 단계 ○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술의 핵심성능으로만 볼 때, 실제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목표 성능을 달성한 단계 ○ 의약품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조품질관리기준) 파일럿 설비를 구축
	6	파일럿 규모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 파일럿 규모(복수 개 ~ 양산규모의 1/10 정도)의 시작품제작 및 평가가 완료된 단계 ○ 파일럿 규모 생산품에 대해 생산량, 생산용량, 수율, 불량률등 제시 ○ 파일럿 생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동반되는 단계 ○ 생산기업이 수요기업 적용환경에 유사하게 자체 현장테스트를 실시하여 목표 성능을 만족시킨 단계 ○ 성능 평가 결과에 대해 가능하면 공인인증 기관의 성적서를 확보 ○ 의약품의 경우 비임상 시험기준인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동물실험규범)기관에서 전임상시험을 완료하는 단계
제품화 단계	7	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 실제 환경에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 ○ 부품 및 소재개발의 경우 수요업체에서 직접 파일럿 시작품을 현장 평가(성능 뿐만 아니라 신뢰성에 대해서도 평가) ○ 의약품의 경우 임상 2상 및 3상 시험 승인 ○ 가능하면 KOLAS 인증기관 등의 신뢰성 평가 결과 제출
	8	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 표준화 및 인허가 취득 단계 ○ 조선 기자재의 경우 선급기관 인증, 의약품의 경우 식약청의 품목허가
사업화	9	사업화	○ 본격적인 양산 및 사업화 단계 ○ 6-시그마 등 품질관리가 중요한 단계

※출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